

Fi 리볼빙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소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

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

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구 분		내 용												
상품명		• Fi 리볼빙 정기예금 (대면,비대면 / 단리,복리)												
가입대상		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												
가입금액		• 10만원 이상												
가입기간		• 36개월												
가입채널		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, SB톡톡*))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•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 (복리식) : 12개월 회전주기마다 이자를 지급 • 매월이자지급식 (단리식)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
제한사항	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
이자율 (26.06.19 현재)	기본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• 가입 후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약정이율이 변동됩니다. - 대면 : 회전시점의 Fi 정기예금 대면 12개월 금리 + 0.05% - 비대면 : 회전시점의 Fi 정기예금 비대면 12개월 금리 + 0.05%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(연,세전)</th><th>대면</th><th>비대면</th></tr><tr><td>기본이율</td><td>3.70%</td><td>4.10%</td></tr></table>	(연,세전)	대면	비대면	기본이율	3.70%	4.10%						
	(연,세전)	대면	비대면											
	기본이율	3.70%	4.10%			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</td></tr><tr><td>1개월 초과</td><td>연0.1%</td></tr></table>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연0.1%		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
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이자 계산식</th></tr><tr><th>월 단위</th><th>일 단위</th></tr><tr><td>단리식</td><td>원금×이율/12×월수</td><td>원금×이율/365×일수</td></tr><tr><td>복리식</td><td>원금×{(1+이율/12)ⁿ-1} (n은 경과월수)</td><td>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</td></tr></table>		구 분	이자 계산식		월 단위	일 단위	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원금×이율/365×일수	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
구 분	이자 계산식													
	월 단위	일 단위												
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원금×이율/365×일수												
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												
원천징수	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	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	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												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중도해지 이율	-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을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<td>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</td>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50%</td></tr> <tr> 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55%</td></tr> <tr> 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60%</td></tr> <tr> <td>12개월이상</td><td> -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-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예치기간	이 율	1개월미만	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12개월이상	-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-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
예치기간	이 율												
1개월미만	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												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											
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											
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											
12개월이상	-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-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												
휴일 처리기준	-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 -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, 이자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		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소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)						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
세제혜택	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- 가입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-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								
분할해지	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												
만기해지 사전신청	- 자동해지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-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												
연계·제휴 서비스	☒ 해당사항 없음 ☐ 해당사항 있음												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하락기에 약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커 금리확정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반면, 상승기에는 약정이율 인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- ☐ 예 ☐ 아니오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- 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